'18년 장애인기업 현장조사 전문평가위워단 추가모집 공고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을 위한 현장조사 및 평가를 수행할 2018년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현장 조사 전문평가위원단」을 모집 공고합니다.

> 2018년 1월 15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I. 모집개요

□ (목적)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기업 대상 현장조사 및 평가 수행 참여

전문평가위원의 책임과 역할

- ① 장애인기업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평가 수행
- ② 장애인기업 확인의 사후관리에 따른 현장 재실사 수행
- ③ 장애인기업 확인에 대한 책임 및 현장실사 시 발생한 민원 응대
- ④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개선을 위해 건의
- ⑤ 장애인기업의 현장실사 결과를 확인기관에 제출
- ⑥ 그 밖에 확인업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 수행
- □ (임기) 평가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
 - * 차년도 위촉시기 및 기타 상황에 따라 연임 가능
- □ (구성) 모집인원 00명
 - 추가 모집지역

지역구분	지역범위	비고
경기도	용인시, 이천시	
인천시	인천시 전지역	
강원도	춘천, 홍천, 가평,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태백, 정선	
충청남도	서산, 당진, 예산, 홍성	
충청북도	제천, 영월, 단양	
전라북도	남원, 임실	
경상북도	영천, 경산, 달성, 구미, 김천, 성주	
경상남도	진주, 거창, 산천, 합천	

- 지역별 등록 장애인기업 수에 비례하여 지역센터 및 거리별 지역 분포를 고려하여 구성
- □ (심사 시 우대사항)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 등 기업 현장조사 업무 관련 실적 보유자
- □ (자격) 다음의 구 분표에 의하여 선정
- 1. 기관 또는 단체에서 경제·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 가. 국가기관, 지자체의 경제·기업 관련 부서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자
 - 나. 준정부기관, 공기업, 기타공공기관의 경제 · 기업관련 부서에서 과장급 이상 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자
 - 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기업관련 단체에서 차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자
- 2. 경제·기업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박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경제·기업에 관해 5년 이상 연구한 자나. 연구기관에서 경제·기업에 관해 5년 이상 연구한 자
- 3. 경제·기업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경영지도사 등 기업 경영에 관한 자격증을 갖추고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나.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등의 자격증을 갖추고 법률, 경영 등의 자문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4. 기타 장애인기업확인을 위한 현장평가에 적합한 자로서 확인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2조 제2호의 장애경제인은 제외

Ⅱ. 저형방법

-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접수처) 강동훈 사원, 이수희 대리
 - * (150-0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 (당산동) 6층
 - * 연락처: 02-2161-6544, 02-2181-6533

- □ (접수기간) 2018. 1. 15.(월) ~ 2018. 1. 19.(금), 18:00까지
 □ (심사기간) 2018. 1. 23(화) 예정
 * 미비된 서류는 센터에서 별도 연락을 취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로만 심사
 □ (결과발표) 2018. 1. 24.(수), 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자 개별통보
 * 유의사항: 위 일정은 센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 (제출서류) 평가위원 신청 시 필요 서류(총 8종)
- 1. 지원신청서 1부.(센터 소정양식)
- 2. 추천서(기관 추천의 경우에 한함) 1부.(센터 소정양식)
- 3. 이력서 1부.(센터 소정양식)
- 4. 서약서 1부.(센터 소정양식)
-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센터 소정양식)
- 6. 자격증명서(위 자격요건 각호에서 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자격 증명서 사본)
- 7. 경력증명서(위 자격요건 각호의 기관에서 근무한 증명서와 4대보험 납입증명)
- 8. 실적증명서(지원신청서에 기입한 실적증명)
- *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평가위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Ⅲ. 기타사항

- 센터는 지원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에 포함되어 제공된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신청자가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합니다.
- 센터는 지원신청서나 기타 증빙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 선정된 위원의 경우에도 해촉사유 발생 시 해촉 가능합니다.
- * 해촉사유는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 제32조 제4)항에 의함

- 평가위원 선정 이후 실시하는 장애인기업 확인 업무 교육에 불참 시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평가위원 Pool에 등록되더라도 우리 센터는 확인업무를 의무배정 하지 않습니다.